

영국의 석유 개발 관련 제도 분석 및 자원 개발 산업에 대한 BREXIT 영향 분석

김 · 장 법률사무소

오연균 변호사 /신창희 미국변호사 /황광연 변호사 /김병규 변호사

제 1 장 영국의 석유산업 현황 및 쟁점

제 1 절 영국의 석유산업 현황

제 1 항 주요 유전

1. 육상유전

영국의 석유유전은 대부분 대륙붕(UK Continental Shelf, “UKCS”)에 위치하고 있으나 육상유전에서도 석유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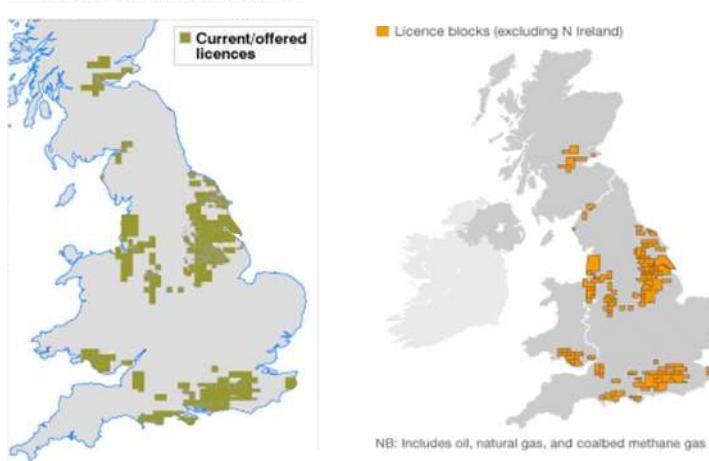


그림 1: 영국의 내륙 석유 및 가스 자원 탐사 현황

영국의 주요 석유 생산지역은 Wessex Basin, Weald Basin, West Lancashire Basin, Cleveland Basin, East Midlands Oil Province (Carboniferous Pennine Basin 이라고도 알려져 있음) 및 Midland Valley of Scotland입니다. 주요 유전으로 Wytch Farm (Wessex Basin에 위치), Welton (East Midlands Oil Province에 위치), Stockbridge (Weald Basin에 위치) 및 Eakring (East Midlands Oil Province에 위치)입니다.¹

각 주요 유전별 2015년도 생산량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전	2015년도 생산량 (m^3)
Wytch Farm (Wessex Basin)	951,729
Welton (East Midlands oil province)	37,003
Stockbridge (Weald Basin)	20,050
Eakring (East Midlands oil province)	Production ceased ²

표 1: 2015년 생산량 기준 주요 육상 유전

2. 해상유전

영국의 주요 해상유전은 영국을 둘러싸고 있는 대륙붕 지역, 즉 UKCS에 위치하고 있는데, UKCS는 각각 (1) the Northern North Sea, (2) the Central North Sea, (3) the Southern North Sea, (4) the Moray Firth Basin로 나뉘어집니다.

UKCS 및 주요 유전 지역을 나타낸 지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그림 2: 영국 해양 유전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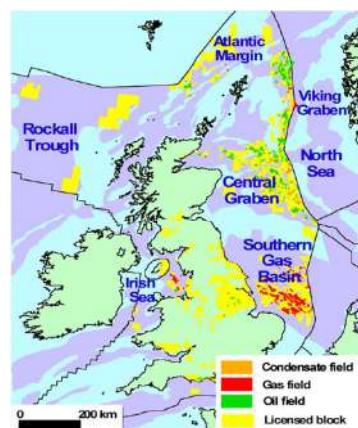


그림 3: 영국 해양 유전의 분포도

¹ The U.K.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The Hydrocarbon Prospectiveity of Britain's Onshore Basins*, 2 (2013).

² Id. at 62; see also Derek Walker, *The History of Eakring*, <http://www.eakring.org/history.htm>.

UKCS 의 주요 유전 및 2015 년도 생산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유전	2015 년도 생산량 (m^3)
Buzzard (Central North Sea)	9,461,263
Golden Eagle (Moray Firth)	2,628,376
Forties (Central North Sea)	2,498,388
Franklin (Central North Sea)	2,123,434
Kinnoull (Central North Sea)	1,696,350
Captain (Moray Firth)	1,497,496
Foinaven (West of Shetlands)	1,329,232

표 2: 2015 년 생산량 기준 주요 해상유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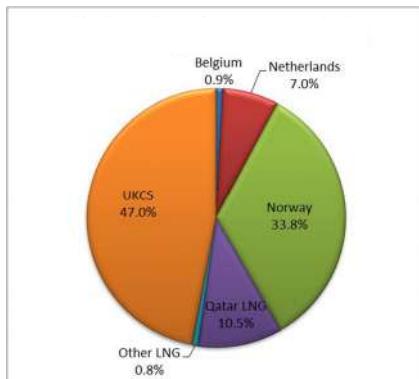


그림 4: 2013 년 영국 석유 수요에 대한 주요 공급지역

위 그림 4에서 볼 수 있듯이 이 지역의 자원이 2014 년에는 약 50% 가량의 영국 내 석유 및 가스 수요를 충당하고 있고, 또한 약 375,000 개의 일자리를 책임지고 있습니다.³ UKCS 지역에서 1967 년 처음 생산한 이후로 1999 년부터 해마다 약 8% 정도씩 생산량이 줄고 있는데, 특히 최근 2014 년과 2015 년 유가 하락의 영향을 받아 영국의 석유 자원에 대한 수익이 최근 상당히 하락 하였습니다. 또한 2016 년에는 약 43%의 UKCS 유전들이 손실을 겪을 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니다.

³ SMEs – the future of UK offshore oil & gas?, Upstream Advisors (May 8, 2016), <http://upstream-advisors.com/news/smes-the-future-of-uk-offshore-oil-gas/>

제 2 항 한국기업이 영국 석유 개발 사업에 진출한 사례

한국기업이 영국의 석유 개발 사업에 진출한 사례로 한국석유공사의 다나 페트롤리엄 (Dana Petroleum) 인수 사례가 있습니다. 다나 페트롤리엄은 1994년도에 설립된 석유 및 가스 탐사 및 생산 회사로, 본사는 영국 스코틀랜드 Aberdeen에 소재하고 있으며 북해로 시작하여 지금은 이집트, 네덜란드, 아프리카에 걸쳐서 사업을 수행하는 회사입니다. 2010년, 한국석유공사에서 3조 3600억 원을 투자하여 지분 64.26%를 확보하였고 현재 다나 페트롤리엄은 한국석유공사의 자회사입니다.

제 2 절 영국 석유산업의 현재 쟁점

제 1 항 개관

영국의 석유산업은 현재 전세계적인 저유가와 주요 생산지역인 UKCS에서의 생산량 급감 및 세일 가스와 같은 비전통 에너지원과의 경쟁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 2 항 UKCS의 현재 문제점

특히 영국의 석유산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UKCS의 유전이 성숙단계에 접어 들면서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석유자원 개발 업체들이 각자의 이익 극대화만을 추구할 것이 아니라 UKCS 전체에서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점이 부각되었고, 업체 간의 협력 및 산업 전반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규제가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⁴

UKCS가 당면한 현재 문제점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성숙기 유전

UKCS는 성숙 단계의 유전으로 생산량이 감소하고 있고 남은 유전들은 매장량이 상대적으로 적고 탐사 및 개발하는데 기술적으로 더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UKCS에서 이미

⁴ Wood Review, *supra* note 5, at 5, 13.

430 억 barrel of oil equivalent (BOE)의 석유가 개발되었고 현재 잔존 매장량으로 영국정부는 약 200 억 BOE로 추정하고 있습니다.⁵

2. 생산량과 생산효율성 감소

석유 생산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는데, 예를 들어, 2010년부터 2013년 사이에는 약 38%가 줄었습니다.⁶ 노르웨이 및 영국의 생산량 추이는 아래 그래프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산량 감소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생산 효율성의 저하를 들 수 있는데, 2004년 80%였던 생산 효율성이 2012년에는 60%까지 떨어졌습니다.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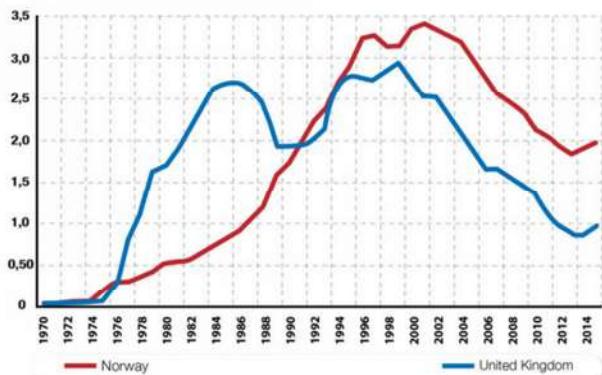


그림 5: 영국과 노르웨이의 석유 생산량

3. 새로운 유전 탐사 필요

기존에 개발한 유전이 성숙단계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유전 탐사의 필요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1990년에는 약 157개의 탐사정(exploration well)이 있었던 반면, 2013년에는 15개로

⁵ OGA Overview 2016, Oil and Gas Authority, 19,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23448/OGA_Overview_May_2016_update.pdf.

⁶ Wood Review, *supra* note 5, at 12.

⁷ *Id.*; see also Wood Review Implementation, <https://www.gov.uk/government/groups/wood-review-implementation-team>.

줄었고⁸, 2012년과 2013년에는 150억 배럴에도 못 미치는 매장량이 발견 되었습니다.⁹ 따라서, 새로운 유전을 탐사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이 지적되었습니다.¹⁰

4. 설비의 노후

설비의 노후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산은 설계수명을 넘어선 경우가 많고 노후된 설비에 유지비가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최근 생산량이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석유자원 개발 업체들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¹¹

5. 소규모 고생산비용 신규 유전

대규모 유전이 개발되던 초기와 비교할 때, 현재 발견되고 있는 유전은 그 규모가 작고 탐사 및 개발에 비용이 더 소요됩니다. 최근 새로이 발견 되고 있는 유전들은 이전에 발견된 유전들에 비해 규모가 약 1/5 정도 수준으로 작고 석유 시추에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¹² 따라서, 여러 업체와 관계자들이 협력해야만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석유개발이 가능하다는 지적도 대두되었습니다.¹³

6. 소규모 다양한 다수의 생산업체

소수의 대기업이 주로 유전을 개발, 생산하던 과거와 비교할 때 현재는 다양한 다수의 유전개발 업체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각 개발업체들이 각자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우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UKCS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좀 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습니다.

⁸ See *Wood Review Implementation*, *supra* note 14.

⁹ *Wood Review*, *supra* note 5, at 4.

¹⁰ *Wood Review*, *supra* note 5, at 3.

¹¹ *Wood Review*, *supra* note 5, at 45.

¹² *Wood Review*, *supra* note 5, at 4. See also *Wood Review Implementation*, *supra* note 14; Nick Cunningham, *UK Oil Industry At the "Edge Of A Chasm*, OilPrice.com, <http://oilprice.com/Energy/Energy-General/UK-Oil-Industry-At-The-Edge-Of-A-Chasm.html>

¹³ *Wood Review*, *supra* note 5, at 12.

제3항 영국 정부의 대응

1. Wood Review

2013년 6월 이와 같이 영국의 석유 개발 사업이 당면한 문제점에 대응하기 위하여 당시 담당 정부 부처였던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현재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로 통합됨)는 석유산업 전문가인 Ian Wood 경에게 UKCS 석유 및 가스산업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Ian Wood 경은 2014년 2월 24일 “UKCS Maximising Recovery Review: Final Report”라는 제목의 보고서(“Wood Review”)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2014년 7월 영국 정부는 Wood 경이 보고서에서 추천한 전략을 대부분 수용하는 내용의 답변서 “Government Response to Sir Ian Wood’s UKCS Maximising Recovery Review”를 발표하였습니다.

2. 핵심제안

Wood Review는 위에서 언급한 UKCS가 당면한 현재 문제점들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대응책으로 크게 네 가지 사항을 제안(Recommendation)하였습니다.¹⁴

- (1) Recommendation 1: 석유 및 가스 개발업체 각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UKCS의 석유 및 가스 개발을 극대화하는 “Maximising Economic Recovery from the UKCS” 즉 “MER UK”라는 새로운 전략을 수립하고 정부와 산업계가 이를 수행할 것.
- (2) Recommendation 2: UKCS의 석유 및 가스 개발 및 생산을 규제할 새로운 규제기관을 창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유전 자원을 관리하고 산업계 전반에 걸쳐서 탐사, 개발 및 생산에 있어서 협력을 도모할 것. 이와 같은 제안은 Oil & Gas Authority의 창설로 연결되었음.
- (3) Recommendation 3: 새로운 규제기관은 MER UK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 받을 것. 즉, 산업에 참여하는 당사자들이 MER UK 전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며,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프로토콜과 절차를 운영하고, 인허가 박탈까지 포함하는 경고 시스템을 운영하는 것을 포함하는 권한을 부여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¹⁴ Ian Wood, UKCS Maximising Recovery Review: Final Report (February 24, 2014)

(4) Recommendation 4: 탐사, 자원 관리(asset stewardship), 지역별 개발, 인프라(infrastructure), 기술 및 폐전(decommissioning)의 6 가지 분야별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할 것.

제 2 장 영국의 석유개발 제도

제 1 절 규제기관

제 1 항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 Industrial Strategy (DBEI)

석유 및 가스 자원의 개발 및 생산을 규제하는 영국의 정부 기관은 에너지 및 기후 변화의 완화와 관련된 정책을 담당하는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DECC)였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메이 총리의 새 내각이 출범하면서 DECC는 Department for Energy Innovation and Skills 와 합병되어 Department for Business, Energy and Industrial Strategy (DBEI)로 바뀌었습니다. 현재 DBEI 가 석유 및 가스의 탐사, 개발 및 생산에 대한 규제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탐사 및 생산 인허가(즉, 라이센스)를 부여하는 권한 및 관련된 처벌권한은 기존 DECC가 보유하고 있었으나 Wood Review 의 제안으로 창설된 Oil & Gas Authority로 이관되어 현재는 Oil & Gas Authority에서 보유하고 있습니다.

제 2 항 Oil and Gas Authority (OGA)

OGA는 Wood Review 의 DECC 외에 독립적인 규제기관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영국 정부가 수용하여 설립한 새로운 규제기관입니다. 즉, 대규모 유전들의 숫자가 감소하고 설비들이 노후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자유 시장 제도는 적합하지 않고, 더욱 큰 권한을 가진 규제기관을 통해 석유자원 개발 사업의 조직화와 협업화를 이끌어야 한다는 지적을 반영하여 출범한 DBEI 산하 기관입니다.

OGA는 현재는 “executive agency”的 형태이나 향후 “government company”로 전환될 예정입니다.

OGA 의 주요 역무는 앞서 언급한 MER UK 전략을 실행하는 것으로 육상 및 해상 유전의 인허가(라이센스) 발급 및 감독하는 역무를 담당합니다. 가스 하역 및 carbon capture & storage 과 관련된 인허가를 발급하고 감독하는 역무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OGA 는 라이센스와 관련된 처벌 권한으로 여러가지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OGA 는 아래 네 가지 sanction notice 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이와 같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Enforcement notices:

해당 업체의 위반 행위가 무엇인지 고지하고 법 규정을 준수, 개선할 수 있는 수정 기간을 부여함.

2. Financial penalty notices:

법 규정을 준수, 개선할 수 있는 수정 기간 부여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OGA 에게 과태료를 내도록 함.

3. Revocation notices:

위반 행위로 인해 관련 라이센스를 취소함. 만약 한 라이센스를 여러 명이 공동으로 보유하고 있고, 그 중 한 명의 사업자에 대해서만 통지서가 발급 된 경우, 그 한 명의 사업자에 대한 라이센스만 취소되고 나머지에 대하여는 영향이 없음.

4. Operator removal notices:

라이센스 보유자에게 운영자(operator)를 해임시키도록 요구하는 통지서.

제 3 향 Office of Unconventional Gas and Oil

Office of Unconventional Gas and Oil 은 영국의 특이 석유/가스 자원이 환경에 안 좋은 영향을 주지 않는 안전한 방법을 통해 개발될 수 있도록 규제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제 4 향 Environment Agency

Environment Agency 는 세일 가스, 탄층 메탄가스, 지하 석탄 가스화 등 모든 내륙 석유 및 가스 관련 작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규제하고 있습니다.

제 5 향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

Health and Safety Executive (HSE)에서 보건 및 안전성 관련 법과 규제에 대한 위반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HSE 에서 제재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각종 인·허가의 철회, 라이센스의 조건 및 내용 변경, 경고, 기소 등이 있습니다.

특히, HSE 의 에너지 담당 부서는 UKCS 의 해양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보건 및 안전성 문제를 규제합니다.

제 2 절 라이센스 제도

Petroleum Act of 1988 은 영국의 석유자원은 국가(Crown)의 소유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GA 가 석유 자원을 탐사하고 생산할 수 있는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grant)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OGA 는 UK MER 전략에 부합하는 라이센스 제도를 마련, 운영하고 있습니다.

라이센스는 OGA 가 매해 “licensing round”에서 업체들간의 경쟁을 통해 선정 된 업체들에게 부여됩니다. 이러한 licensing round 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OGA 로부터 업체가 초청을 받아야 합니다. 특별한 사유로 인해 일정 업체가 licensing round 에 참여하지 못했을 경우, “out-of-round application”을 통해서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라이센스를 받기 위해서는 영국에 사업장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이는 영국법인이거나 영국에 인력이 배치된 고정사업장이 있거나 또는 외국 법인의 경우 영국에 지사를 두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¹⁵

제 1 향 라이센스의 종류

석유 자원의 탐사 및 생산을 위한 라이센스는 크게 육상유전 라이센스와 해상 유전 라이센스로 구분되며 비배타적인 탐사 라이센스와 배타적인 생산 라이센스로 구분됩니다. 생산 라이센스는 탐사부터 생산까지 모두 커버하는 라이센스입니다.¹⁶

1. 육상유전¹⁷

- (1) Exploration License. 이는 비배타적인 탐사권만 필요한 업체에 적합한 라이센스입니다. 즉, 주로 지질데이터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이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이는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라이센스며 비배타적인 라이센스로, 아래 후술하는 라이센스로인 rental은 현재 연간 GB£2,000 고정 금액입니다.
- (2) Petroleum Exploration and Development License (PEDL).¹⁸ 육상 유전의 생산 라이센스의 공식 명칭은 PEDL입니다. PEDL은 initial term, second term 및 third term 의 세 단계를 커버합니다.
 - initial term은 5년으로 탐사 업무를 위한 기간으로 OGA 와 합의 하에 work program 을 수행하여야 하며, 라이센스 업체가 이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라이센스 받은 지역의 50%를 반납하지 않는 경우 라이센스가 종료됩니다. 개발 작업이 신속히 이루어지는 경우 initial term 중에 생산하는 것도 허용됩니다.

15 <https://www.ogauthority.co.uk/licensing-consents/licensing-system/licensee-criteria/>

16 <https://www.ogauthority.co.uk/licensing-consents/overview/>

17 <https://www.ogauthority.co.uk/licensing-consents/onshore-licences/>

¹⁸ PEDL은 과거 탐사, 평가, 개발 및 생산 단계별로 별도의 라이센스를 받아야 하는 제도를 개선하여 1996년부터 도입된 제도임.

- Second term 은 5 년으로 평가 및 개발 업무를 위한 기간으로 수행하여 야 하는 work program 은 없으나 OGA 가 개발 계획 (development plan)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라이센스가 종료됩니다.
- Third term 은 생산을 위한 기간으로 20 년입니다.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는 후술하는 라이센스료 즉, rental 을 매년 납부하여야 합니다.

2. 해상유전¹⁹

Promote License 및 Frontier License 등 special license 를 포함했던 해상유전 라이센스 제도는 최근 새로이 개편되어 현재 Exploration License 와 Production License 로 구분되며, 제 29 차 licensing round 부터는 Offshore Innovate License 만 발급되고 있습니다.

- (1) Exploration License. 이는 비배타적인 탐사권만 필요한 업체에 적합한 라이센스입니다. 즉, 주로 지질데이터를 수집하여 판매하는 사업자들이 이 라이센스를 신청합니다. 이는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지 않는 라이센스며 비배타적인 라이센스로, 아래 후술하는 라이센스료인 rental 은 현재 연간 GB£2,000 고정 금액입니다.
- (2) Production License. 생산 라이센스인 Production License 는 initial term, second term 및 third term 의 3 단계 기간을 커버하는 라이센스입니다.
 - 주로 탐사 업무로 이루어진 work program 을 수행해야 하는 initial term 중에 라이센스를 받은 업체가 이를 수행하지 못하거나 기간이 끝나고 라이센스 받은 지역 중 일정 지역 (주로 50%에 해당하는 지역)을 반납하지 않을 경우 라이센스가 종료됩니다. 개발 작업이 신속히 진행되는 경우 initial term 중에 생산 업무를 시작해도 무방합니다.
 - Second term 중에는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는 work program 은 없으나 이 기간 중 OGA 로부터 개발계획 (development plan)에 대해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라이센스가 종료됩니다.
 - Third term 은 주로 생산을 위한 단계로 후술하는 연간사용료 rental 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3) Offshore Innovate License. Offshore Innovate License 는 신청자가 자신의 상황에 맞는 work program 을 고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좀 더 탄력적인

¹⁹ <https://www.ogauthority.co.uk/licensing-consents/offshore-licences/>

라이센스입니다. 기존 Production License 의 3 단계 기간을 모두 커버하되 initial term 을 다시 Phase A, Phase B, Phase C 의 3 단계로 세분화하였습니다. Initial term 은 라이센스에 따라 다르지만 최대 9 년, second term 은 4 년, third term 은 18 년이며, initial term 이 끝나고 라이센스 업체는 50%에 해당하는 지역을 반드시 반납(relinquish)해야 합니다.

- Initial term. Phase A 는 지질공학적 연구 및 지질 데이터 분석하는 단계, Phase B 는 지질 조사를 시행하는 단계, Phase C 는 drilling 을 수행하는 단계입니다. Phase A 와 B 는 생략할 수 있으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Phase C 는 수행하여야 합니다.
- 현재 라이센스의 표준양식은 Offshore Innovate License 에 적합한 표준양식으로 OGA 가 개정하고 있습니다.

제 2 항 라이센스의 유효기간²⁰

각 라이센스는 허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OGA 에서는 라이센스 지역이 잘 관리 되었고 석유가 지속적으로 생산 되는 상황이라면 (생산에 필요하지 않은 라이센스 지역은 반납한다는 전제 하에 라이센스의 변경을 통하여) 라이센스를 연장시켜 주기도 합니다. 또한, 라이센스의 만기일이 가까워진 상황에서 아직 석유가 생산 되지는 않았지만 생산이 임박했다면 라이센스의 연장도 가능합니다.

제 3 항 라이센스료

라이센스를 발급 받은 후 해마다 소정의 “rental”이라고 불리는 금액을 라이센스료로 지불해야 합니다. 라이센스 상 등록 되어있는 지역이 1 제곱킬로미터씩 늘어날 때마다 요금율이 늘어나는데, 이를 통해 업체들이 더 이상 개발하지 않고자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빨리 반납(relinquish)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또한, 위의 “rental” 외에 추가 부담금이 있는데, 이는 OGA 의 자금으로 이용 됩니다. 2016 년 4 월 1 일부터 2017 년 3 월 31 일까지는 다음과 같은 추가 부담금이 책정 되었습니다.

- 해상유전 생산 라이센스 (생산 전): GB£6,808.65

²⁰ <https://www.ogauthority.co.uk/licensing-consents/licensing-system/licence-extensions/>

- 해상유전 생산 라이센스 (생산 중): GB£64,951.96
- 해상유전 탐사 라이센스: GB£6,808.65

제 4 항 기타 라이센스 관련 조항

1. 라이센스의 양도

라이센스는 OGA 의 허가 없이 매각 또는 양도할 수 없습니다. OGA 는 허가 없이 라이센스를 할당하는 행위를 매우 심각한 법적 위반 행위로 보고 즉각적으로 라이센스를 취소하거나 양도를 취소합니다.

2. 연대책임

또한, 라이센스 상 허가를 받은 모든 자들은 라이센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문제들에 대해 연대책임(joint and several liability)을 집니다.

3. 기타

OGA 의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조항을 표준 조항(model clause)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제 3 절 조세 제도

제 1 항 영국 석유 산업 관련 조세 제도의 개관

2003년 로열티(royalty)가 전면 폐지되기까지의 영국의 석유 산업에 대한 조세 제도의 변천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유가, 환경, 업계 압력 등의 요인으로 인해 영국 정부는 각 시기에 서로 다른 정책 목표를 추구했습니다.

1975년 제도 첫 수립	고유가시대 – 세수 증대 추구
1983년 로열티 폐지	저유가 – 유전 개발 증진 추구
1993년 PRT 폐지	저유가 – 유전 개발 증진 추구
2002년 10% supplementary charge 도입	신유전 개발 활발 – 세수 증대 추구

표 3: 영국 석유 산업 관련 조세 제도의 변천

로열티 폐지는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습니다. 1982년 3월 이후에 개발된 유전에 대한 로열티가 1983년에 먼저 폐지된 이후 2002년에 1982년 3월 이전에 개발된 유전에 대한 로열티가 폐지되었습니다. 석유 산업 과세제도상 변화 중 로열티 폐지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1. 1975년까지의 제도

75년 제도는 로열티, PRT, 법인세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유전의 수익성에 좋지 않은 구조였고 특히 로열티는 소규모 유전에 큰 부담이 되었는데, 로열티는 수입액에 대해 역진적이고 생산 개시 직후부터 적용되어 세액을 더 빨리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 1983년 1차 로열티 폐지

1981년, 1982년에 국제유가가 하락하여 유전 개발 등이 문화되자 기업의 세금 부담을 줄여 유전 개발을 증진하기 위해 82년 3월 이후에 신규로 개발하는 유전에 대한 로열티를 폐지하였습니다.

3. 2002년 2차 로열티

폐지 당시에는 고유가와 활발한 개발 활동으로 정부의 목적이 세수 증대에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2년 개혁의 핵심은 supplementary charge 를 도입해 세입을 증대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기업들이 반발하자, 이를 무마하기 위해 1982년 3월 이전에 개발된 유전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폐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개발된 유전에 대해서는 이미 1983년에 로열티가 폐지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세금 제도 일원화, 단순화를 위한 방안이기도 했습니다.

현재 영국의 석유 자원 개발 사업 관련 세금은 크게 세 가지가 있으며 이하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 2 향 Petroleum Revenue Tax (PRT)

업체별 총생산량에 대해 과세하는 것이 아니라, 각 유전에서 생산 된 석유와 가스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해 과세하며, 1993년 3월 16일 이전에 개발 허가를 받은 유전들에만 해당됩니다.

PRT 가 납부되는 경우 이는 후술하는 RFCT 나 SC 를 부과하기 위한 수익 계산에서 PRT 납부금액은 차감됩니다.

PRT 의 세율은 35%였는데, 2016년 3월 영국 정부가 2015년 12월 31일 이후 과세 될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0%의 세율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PRT 에는 “adjusted ring fence profits”에 대해 20%의 추가적인 세금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10%로 줄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영국의 석유 자원 개발에 대한 투자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²¹

제 3 향 Ring Fence Corporation Tax (RFCT)

RFCT 는 법인세를 변형시킨 형태의 세금이며 위의 PRT 와는 다르게 업체별 총 개발 및 생산 활동에 대해 과세합니다. 개발 허가를 받은 시기는 고려되지 않습니다.

이 세금은 석유 및 가스 생산 활동에서 발생한 수익과 다른 사업에서 일어난 손실을 상계시켜서 세금을 회피하려는 행위를 막기 위한 것으로, 석유와 가스 개발 활동 및 관련 권한은 세금 관련 사항을 처리할 때 다른 사업과는 별도로 취급하여 (“ring fenced”) 다른 사업에서 발생한 손실은 그 사업에 대해서만 상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RFCT 의 세율은 30%이며, 정부는 30%로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는데, 최근 non-ring fence profit 에 대한 세율을 낮추는 움직임과는 상반됩니다.

²¹ *Oil and gas taxation: reduction in Petroleum Revenue Tax and supplementary charge*, HM Revenue & Custom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il-and-gas-taxation-reductionin-petroleum-revenue-tax-and-supplementary-charge](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il-and-gas-taxation-reduction-in-petroleum-revenue-tax-and-supplementary-charge/oil-and-gas-taxation-reductionin-petroleum-revenue-tax-and-supplementary-charge)

RFCT 의 계산은 회사의 장부이익을 바탕으로 하며, 공장 및 기계 비용, 연구 개발비, 광물 발굴 비용, 유전 해체 비용 등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제 4 향 Supplementary Charge (SC)

“Ring-fenced”된 석유 관련사업으로부터 얻은 수익에 대한 세금인데, 금융 비용 (finance costs)은 제외하고 계산한 수익에 부과됩니다.

2002 년에 처음 시행되었고, 그 당시의 SC 의 세율은 10%였는데 향후 20%까지 증가 되었다가 영국정부는 2016년 3월, 2016년 1월 1일 이후부터 세율을 10%로 낮추겠다고 밝혀 현재 세율은 10%입니다

또한, Finance Act 2015 라는 법령을 통해 2015년 4월 1일 이후 유전과 기초 시설에 투자하여 얻은 “adjusted ring fence profits”的 62.5%는 supplementary charge 에서 제외시키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Finance Act 2015는 일부 고압력, 고온 유전에 대해 supplementary charge 의 대상이 되는 adjusted ring fence profits 를 해당 지역에서의 자본지출 등의 62.5%로 줄여주는 조항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제 5 향 세율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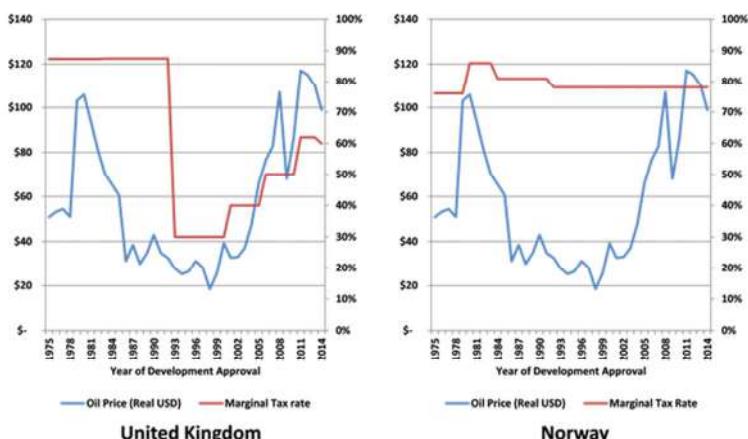


그림 6: 영국과 노르웨이의 유가 변동에 따른 한계 세율의 변동 비교

위의 그래프에서도 볼 수 있듯이, 영국은 노르웨이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유가 변동에 따라 세율을 자주 조정하고 있습니다. 유가가 떨어지면 세율도 그에 따라 낮추고, 유가가 상승 하면 세율도 다시 높이곤 하는데, 이로 인해 업체들이 세율을 예측하기가 어려워 안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또한 영국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영향을 고려하여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²²

제6항 기타

1. 부가가치세 (VAT)

위의 세가지 세금 외에도 부가가치세(VAT)가 있는데, 영국에서는 영국회사를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 중 과세 대상인 물품들을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 UK VAT에 반드시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 회사의 경우, 공급 된 과세 대상 물품의 총 가치가 연간 GB £83,000(2016년 4월 1일 기준)을 넘을 경우 등록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1년 1월 1일부터 모든 수입 천연가스에 대해서는 종류나 수입 방법 등에 상관 없이 VAT를 면제해주고 있습니다.

2. 관세²³

EU 외에 나머지 지역으로부터 수입 된 모든 물품 (연료 포함)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데, Brexit 이후 EU에서 영국이 어떠한 조건으로 탈퇴하는지에 따라 EU로부터 수입 된 물품에 대한 관세와 과세 여부 등이 결정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관세 목적으로 볼 때, UKCS는 EU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어 왔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Brexit 이후에도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3. 국내소비세

이 외에 영국으로 수입 되는 석유 및 가스에는 별도의 국내 소비세도 부과 됩니다. 세율은 품목 별로 조금씩 다릅니다.

²² Id.

²³ A Guide to UK Oil and Gas Taxation, KPMG,
http://www.congreso.es/docu/docum/ddocum/dosieres/sleg/legislatura_10/spl_76/pdfs/16.pdf

제 3 장 Brexit 의 영향

제 1 절 Brexit 란?

Brexit 란 Britain 이라는 영국을 뜻하는 단어와 탈퇴라는 뜻의 Exit 이라는 단어의 합성어로,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를 뜻합니다. 영국은 1975년에 국민의 65% 찬성으로 유럽연합에 가입하게 되었는데, 최근 들어 이민자 문제와 남부 유럽 국가들의 경제위기를 지원하는 것에 대한 불만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유럽 재정위기로 EU의 재정 악화가 심화되자 영국이 내야 할 EU 분담금 부담이 커졌고, 이에 영국 보수당을 중심으로 EU 잔류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었습니다. 특히, 이민자 문제로 인해 영국 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과 유럽 연합에서 탈퇴함으로써 영국의 경제가 활성화 될 것이라는 주장이 확산 되었습니다. 한편, 반대 여론은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탈퇴하면 유럽 국가들과의 자유 무역을 통해 얻는 혜택이 줄어들어서 오히려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2016년 6월 23일 영국 국민투표가 이루어졌고, 그 결과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확정 되었습니다.

Brexit로 인해 EU 존립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되기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그렉시트(그리스의 유로존 탈퇴)는 물론 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체코 등에서도 EU 탈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Brexit는 회원국 탈퇴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EU 조약(리스본 조약) 50조에 따라 진행되는데, 이 조항은 EU를 탈퇴하려는 회원국이 EU 이사회에 탈퇴 의사를 정식으로 통보하면 이 시점으로부터 2년간 회원국과 EU가 맺어온 무역 등을 새로 협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과 EU는 상품·서비스·자본·노동 이동의 자유 및 정치·국방·치안·국경 문제 등 EU 제반 규정을 놓고 추후 향방을 설정할 예정입니다. 공식적으로 탈퇴 국민투표 이후 리스본조약 50조를 이행해야 하는 시한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협상이 타결되지 않아도 2년이면 자동 탈퇴 처리됩니다. 현재 영국의 EU 탈퇴 협상은 2017년도부터 시작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래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막상 Brexit가 현실화 되고 나니 Brexit 이후 영국 경제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습니다. 특히 영국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 투자의 감소, GDP의 감소 등이 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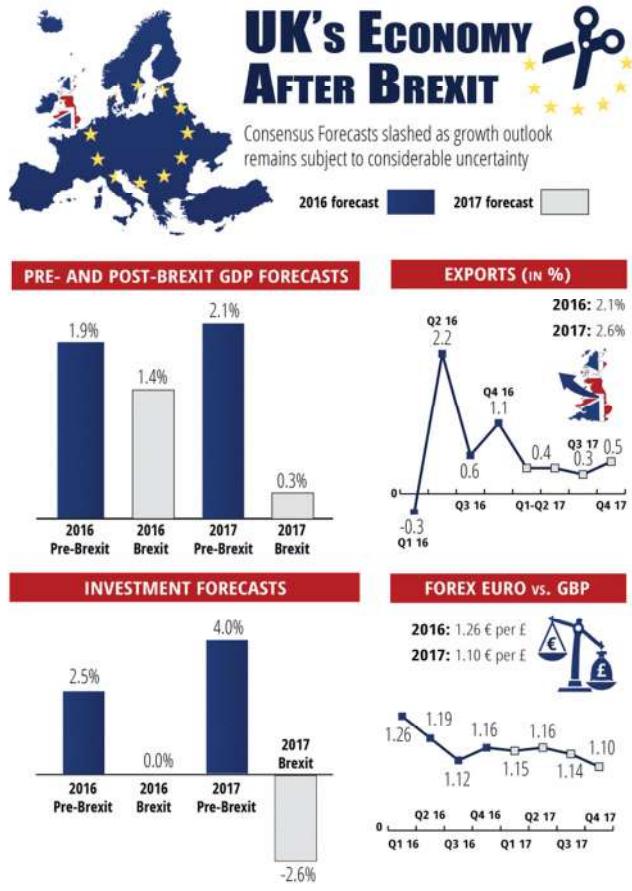


그림 7: Brexit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예상

제2절 Brexit 의 Exit Timeline 및 절차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가 국민투표로 부결시킨 EU 헌법을 대체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약인 리스본 조약의 (Treaty of Lisbon) Article 50에 유럽연합의 탈퇴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Article 50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먼저 Article 50를 발동시키며 유럽연합에게 공식적으로 탈퇴의사를 전달해야 합니다. 이후, 2년 동안의 탈퇴 협상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모든 협상내용은 유럽연합 회원국들과 유럽연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협상과정 2년동안 영국은 유럽연합의 의사결정권을 박탈당합니다. 이 모든 과정 후 영국은 유럽연합에서 탈퇴가 완료됩니다.

신설된 Brexit 부(공식 명칭은 Department for Exiting the European Union)의 장관을 맡고 있는 데이비드 데이비스는 두 번째 국민투표 가능성을 일축하며 Brexit를 확정 지었습니다. 데이비드 데이비스와 함께 Brexit를 이끌고 있는 영국 외무부 장관 보리스 존슨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르면 내년 초에 리스본 조약 50 조 (Article 50)를 개시 할 수 있다고 본다며 협상이 시작되면 EU에서 정한 협상 시한인 2년을 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국 총리 테레사 메이와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인 도날드 투스크가 비공식 EU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가지며 향후 Brexit를 논의 했습니다. 투스크 의장은 메이 총리가 당시 회담에서 연내 (2016년) Article 50를 발동하는 건 거의 불가능 하다면서도 내년 1월이나 2월에는 준비가 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투스크 의장은 영국 정부가 Article 50를 발동하기 전까지 Brexit에 관한 공식적인 회담을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디펜던트의 기사에 따르면 Article 50을 발동하는 시점이 더욱 늦어져서 2017년 가을이 될 수도 있습니다. Brexit 부와 국제무역부 등 관련 정부 부처들이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고 2017년에 있을 프랑스와 독일의 선거 역시 Article 50의 발동을 늦출 수 있습니다²⁴.

제3절 영국 석유 자원 개발 사업에 대한 Brexit의 영향²⁵

Brexit의 영향은 영국이 EU에서 완전히 탈퇴할 때 협상을 어떻게 진행하여 어떠한 조건으로 탈퇴하는 지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우선은 영국이 새로운 영국 자체의 법이 입법되기 전까지는 EU 법을 따르던 부분은 대부분 그대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으로는 어떻게 될지 아직은 불투명합니다.

석유 및 가스 등의 자원을 개발하는 제도는 EU 회원국 각국의 고유 규제 영역이었고 영국의 대륙붕에서의 석유 탐사 및 생산은 국제 조약에 따라 규율되어 왔기 때문에 석유 자원 개발제도에 Brexit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즉, Petroleum Act 등 영국 고유의 법제가 1934년부터 줄곧 영국의 석유자원 개발 및 생산을 규제해왔고 영국 대륙붕에서의 석유자원 개발 및 생산은 거의 국제협약에 의해 규제 되고 있는데, Brexit 이후에도 영국은 이 국제협약들을 유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²⁴ <http://www.independent.co.uk/news/uk/politics/brexit-date-article-50-eu-referendum-result-europe-theresa-may-a7189851.html>

²⁵ *How Will Brexit Impact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Latham & Watkins LLP (July 21, 2016) [| 93 |](https://www.lw.com/thoughtLeadership/LW-How-Will-Brexit-Impact-Environmental-and-Energy-Law: Brexit and the Energy and Resources sector, Clifford Chance (July 2016), https://www.cliffordchance.com/briefings/2016/07/brexit_and_the_energyandresourcessector.html</p>
</div>
<div data-bbox=)

Brexit 가 영국의 석유 산업에 미칠 부가적인 영향으로 EU 와 영국 사이의 자유로운 인력의 이동이 감소하고 운영 비용이 다소 상승할 것이라는 점²⁶²⁷, 영국의 대륙붕에 대한 투자가 감소하고 소규모 생산 업체가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점²⁸ 및 스코틀랜드의 독립 문제가 재생점화²⁹ 될 것이라는 점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한편, Brexit 로 인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는데, 이는 파운드화 가치의 하락 때문입니다. 생산비용은 파운드화로 지불 되지만, 석유는 달러화로 판매되기 때문에 영국의 석유 개발 및 생산 업체들의 입장에서는 생산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는 것입니다.³⁰ 아울러, 파운드화 가치 하락으로 영국의 석유 및 가스 업체에 대한 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과 EU 의 과학연구자금 지원 혜택이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전문가들의 예측을 감안하면, 영국의 석유 산업에 투자하는 외국인 투자자에게 Brexit 가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

-
- 26 Tom Pakenham-Walsh, Potential Impacts of BREXIT on UK Oil and Gas,
[http://www.rocksolve.com/articles/Potential Impacts of BREXIT on UK Oil and Gas](http://www.rocksolve.com/articles/Potential%20Impacts%20of%20BREXIT%20on%20UK%20Oil%20and%20Gas) (July 9, 2016)
- 27 Chris Smith, What The Brexit Result Means For The UK Oil And Gas Industry, OilPrice.com
(June 24, 2016)
- 28 Kevin Baxter, 'Brexit' Unlikely to Have Big Impact on U.K. Oil and Gas Market, Consultant Says, The Wall Street Journal (June 24, 2016)
- 29 Brexit 투표 이후 니콜라 스터전 스코틀랜드 자치정부 수반이 스코틀랜드의 독립 의사를 다시 한번 표시했는데, 영국의 가장 중요한 유전 중 하나인 북해지역이 대부분 스코틀랜드 영해이기 때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독립 여부가 확실치 않아지면서 북해지역의 석유 사업이 불안정해지면서 이에 따라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Angelina Rascouet, North Sea Oil Faces Worsening Investment Drought After Brexit, Bloomberg (June 28, 2016),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6-28/north-sea-oil-industry-faces-years-of-brexit-induced-turmoil>
- 30 Luke Graham, Brexit: If Scotland leaves the UK, what'll happen to North Sea oil?, CNBC (June 27, 2016) <http://www.cnbc.com/2016/06/27/brexit-if-scotland-leaves-the-uk-whatll-happen-to-north-sea-oil.html>

〈그림 및 표 출처〉

그림 1	영국의 내륙 석유 및 가스 자원 탐사 현황	Katie Hunt, <i>Rush for oil reaches Britain's fields</i> , BBC News (August 26, 2008), http://news.bbc.co.uk/2/hi/business/7572729.stm
그림 2	영국 해양 유전의 분포도	Sir Ian Wood, UKCS Maximising Recovery Review: Final Report ("Wood Review") (February 24, 201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7727/UKCS_Maximising_Recovery_Review_FINAL_72pp_locked.pdf
그림 3	영국 해양 유전의 분포도	Simon Toole, <i>Opening Address by DECC</i> (December 2013), http://www.pesgb.org.uk/media/uploads/events/prospex/docs/talks/01_SimonTooleDECCopeningaddressfinal11Dec2013forpublication.pdf
그림 4	2013년 영국 석유 수요에 대한 주요 공급지역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i>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UK energy security</i> (May 8, 20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2010-to-2015-government-policy-uk-energy-security/2010-to-2015-government-policy-uk-energy-security
그림 5	영국과 노르웨이의 석유 생산량	Nakhle, <i>supra</i> note 11.
그림 6	영국과 노르웨이의 유가 변동에 따른 한계 세율의 변동 비교	<i>UK Taxation on Oil and Gas Extraction is Cut Again, but Remains Volatile</i> , Gaffney, Cline & Associates, http://gaffney-cline-focus.com/uk-taxation-on-oil-and-gas-extraction-is-cut-again-but-remains-volatile
그림 7	Brexit 이후 영국 경제의 변화 예상	<i>How will the UK economy fare after Brexit?</i> , Focus Economics, http://www.focus-economics.com/blog/how-will-the-uk-economy-fare-after-brexit
표 1	2015년 생산량 기준 주요 육상 유전	Oil and Gas Authority, <i>Oil Production sorted by Year</i> , https://itportal.decc.gov.uk/pprs/full_production.xlsx (from https://www.gov.uk/guidance/oil-and-gas-uk-field-data)
표 2	2015년 생산량 기준 주요 해상 유전	Oil and Gas Authority, <i>supra</i> note 4.

〈참고 자료 목록〉

Alan Tovey, *North Sea oil and gas production to reverse 15 years of decline*, The Telegraph (January 4, 2016), <http://www.telegraph.co.uk/finance/newsbysector/energy/oilandgas/12016129/North-Sea-oil-and-gas-production-to-reverse-15-years-of-decline.html>

Angelina Rascouet, *North Sea Oil Faces Worsening Investment Drought After Brexit*, Bloomberg (June 28, 2016), <http://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6-06-28/north-sea-oil-industry-faces-years-of-brexit-induced-turmoil>

Brexit and the Energy and Resources sector, Clifford Chance (July 2016),
https://www.cliffordchance.com/briefings/2016/07/brexit_and_the_energyandresourcessector.html

Carole Nakhle, *Assessing the future of North Sea oil and gas*, Crystol,
<http://www.crystolenergy.com/assessing-future-north-sea-oil-gas/>

Department of Energy and Climate Change, *2010 to 2015 government policy: UK energy security* (May 8, 2015),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2010-to-2015-government-policy-uk-energy-security/2010-to-2015-government-policy-uk-energy-security>

Derek Walker, *The History of Eakring*, <http://www.eakring.org/history.htm>.

The Efficiency Task Force, Oil & Gas UK, <http://oilandgasuk.co.uk/the-efficiency-task-force-etf.cfm>

A Guide to UK Oil and Gas Taxation, KPMG,
http://www.congreso.es/docu/docum/ddocum/dosieres/sleg/legislatura_10/spl_76/pdfs/16.pdf

How Will Brexit Impact Environmental and Energy Law?, Latham & Watkins LLP (July 21, 2016)
<https://www.lw.com/thoughtLeadership/LW-How-Will-Brexit-Impact-Environmental-and-Energy-Law>

Katie Hunt, *Rush for oil reaches Britain's fields*, BBC News (August 26, 2008),
<http://news.bbc.co.uk/2/hi/business/7572729.stm>

Luke Graham, *Brexit: If Scotland leaves the UK, what'll happen to North Sea oil?*, CNBC (June 27, 2016)
<http://www.cnbc.com/2016/06/27/brexit-if-scotland-leaves-the-uk-whatll-happen-to-north-sea-oil.html>

Marc Anis-Hana, *Expert Insight*, Oil & Gas Council,

http://www.oilandgascouncil.com/expert_insight_articles/north-sea-there-still-value-mature-basin-marc-anis-hanna-ed-vaughan-equity-analyst;

Meeting the challenge of increasing North Sea costs (June 2014), McKinsey & Company (the "McKinsey June 2014 Report"),

<http://www.mckinsey.com/~/media/McKinsey/Industries/Oil%20and%20Gas/Our%20Insights/Meeting%20the%20challenge%20of%20increasing%20North%20Sea%20costs/Meeting%20the%20challenge%20of%20increasing%20North%20Sea%20costs.ashx>

New Oil and Gas Decommissioning Strategy Published by UK Oil and Gas Authority, Latham & Watkins LLP (August 4, 2016), <http://www.latham.london/2016/08/new-oil-and-gas-decommissioning-strategy-published-by-uk-oil-and-gas-authority/>

Nick Cunningham, *UK Oil Industry At the "Edge Of A Chasm"*, OilPrice.com,

<http://oilprice.com/Energy/Energy-General/UK-Oil-Industry-At-The-Edge-Of-A-Chasm.html>.

OGA Overview 2016, *Oil and Gas Authority*, 19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523448/OGA_Overview_May_2016_update.pdf

Oil and Gas Authority, *Oil Production sorted by Year*,

https://itportal.decc.gov.uk/pprs/full_production.xlsx (from <https://www.gov.uk/guidance/oil-and-gas-uk-field-data>)

Oil and gas taxation: reduction in Petroleum Revenue Tax and supplementary charge, HM Revenue & Customs, [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il-and-gas-taxation-reductionin-petroleum-revenue-tax-and-supplementary-charge](https://www.gov.uk/government/publications/oil-and-gas-taxation-reduction-in-petroleum-revenue-tax-and-supplementary-charge/oil-and-gas-taxation-reductionin-petroleum-revenue-tax-and-supplementary-charge)

Planning for Shale Gas and Oil, Planning Advisory Service,

<http://www.pas.gov.uk/documents/332612/6752551/Updated+26.4+Shale+advice+note+1/cb21f215-c483-42eb-af24-3d8363efb8f5>

Simon Toole, *Opening Address by DECC* (December 2013),

http://www.pesgb.org.uk/media/uploads/events/prospex/docs/talks/01_SimonTooleDECCopeningaddressfinal11Dec2013forpublication.pdf

Sir Ian Wood, *UKCS Maximising Recovery Review: Final Report ("Wood Review")* (February 24, 2014),

https://www.gov.uk/government/uploads/system/uploads/attachment_data/file/497727/UKCS_Maximising_Recovery_Review_FINAL_72pp_locked.pdf

SMEs – the future of UK offshore oil & gas?, Upstream Advisors (May 8, 2016), <http://upstream-advisors.com/news/smes-the-future-of-uk-offshore-oil-gas/>

The U.K. Department of Energy & Climate Change, *The Hydrocarbon Prospectivity of Britain's Onshore Basins*, 2 (2013).

UK sees first rise in oil & gas production for over 15 years (January 4, 2016),

<http://www.offshoreenergytoday.com/uk-sees-first-rise-in-oil-gas-production-for-over-15-years/>

UK Taxation on Oil and Gas Extraction is Cut Again, but Remains Volatile, Gaffney, Cline & Associates, <http://gaffney-cline-focus.com/uk-taxation-on-oil-and-gas-extraction-is-cut-again-but-remains-volatile>

Wood Review Implementation, <https://www.gov.uk/government/groups/wood-review-implementation-team>.